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

이철재
공인회계사
02-397-6814 / lcj651@daum.net

▶ 목 차

- I. 개요
- II.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 III.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IV.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규정

0 I. 개요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주식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절차는 상법,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¹⁾, 과세문제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원고에서는 자기주식과 관련된 상법,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1) 본 원고에서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0 II.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01. 상법의 자기주식 규정의 입법연혁

2011년 4월 14일 전의 상법(이하 “중전 상법” 이라고 한다)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 취득이 불가피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하였다.

중전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규제한 것은, 회사가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부 주주를 선정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선정된 주주와 선정되지 않은 주주 간의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될 수 있고 취득가액의 저가 또는 고가 여부에 따라 주주 간의 이익분배를 차별하는 결과가 되며, 회사 내부자의 추가조작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은 상장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을 비상장법인에 비하여 우대하는 결과가 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한 기업의 재무관리를 탄력적으로 하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1년 4월 14일 상법을 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자본시장법의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상법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0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1.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금지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없다.

▶1.2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적 허용

(1)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의 취득

1) 자기주식 취득방법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2)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1항).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상법 시행령」 제9조).

(가) 비공개균등조건 취득방법 :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항).

2) 배당가능이익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위의 미실현이익은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비공개균등조건 취득방법의 구체적인 절차

① 주주총회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② 이사회가 결의 :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써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 이라고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③ 주주에 대한 통지 :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②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도신청 :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매수계약의 성립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예) ‘갑’ 회사는 자기주식 80주를 비공개균등조건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았다.
주주 A가 60주, 주주 B가 40주의 매수신청을 한 경우 계약성립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A주주 = 80주 \times (60주 / 100주) = 48주$$

$$B주주 = 80주 \times (40주 / 100주) = 32주$$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341조의2).

-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3.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행위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 96다12726, 1996.6.25.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대법원 64마719, 1964.11.12., 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무효인 경우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식매도인도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며,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도 없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도 없고,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도 없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자기주식에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법무부는 자기주식은 무상주를 받을 권리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법무부 법심 2301-1386).

IV.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규정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에 따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진다.

01.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

(대법 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대법 2010두25152, 2011.8.25.).

법인이 자기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다음 두가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시가인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적절히 소득처분한다.
(법령 88 ① 6호).
- ②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8 ① 4호, 법령 53 ②).

지급이자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총차입금)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구분	내용
법인-1148, 2010.12.9.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 으로 본다.
서면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조세심판례 [조심 2013중788, 2013.6.25.]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의 사례

乙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김한공씨로부터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원에 취득하여 상법에 위배되었다. 乙법인이 실제 매입가액을 자기주식(자본차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설명하시오.

해답

<결산서> [차] 자기주식(자본조정) 10,000 [대] 현금 10,000
<세법> [차] 가지급금 10,000 [대] 현금 1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가지급금 10,000 유보	자기주식(자본조정) 10,000 기타

0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2.1. 상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인지 여부

법인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따라 형식상 균등조건으로 하였으나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한 것을 과세관청이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본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해당 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 7월 7일 심판청구가 기각(조심 2016서1700, 2016.7.7.)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도 2017년 1월 20일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11년 상법이 개정된 후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658, 2017.1.20.)을 소개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1) 사건의 개요

A법인(이하 '원고' 라 한다)은 1988년에 설립되어 방위산업 관련 화공약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년 중에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한모씨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전체 주식의 6.25%)를 1주당 11,000원, 합계 11억원에 양수하였고, 한모씨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에 원고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 매수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6년 4월 4일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하여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한모씨의 아들 3명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모씨가 보유한 쟁점주식만 취득함으로써 균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이 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목적이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한모씨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증가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 거래로 한모씨의 비상장주식은 감소하고 예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속가능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매각 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2014년과 2015년에도 한모씨로부터 계속하여 각 10만주씩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계획도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이 없으며,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 [납세자번호]
1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700 (2016.07.07)

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 [납세자번호]
1	소득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서울행법2016구합73658 (2017.01.20)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자로 평가한 10,939원을 가감하여 11,000원에 양수한 점,
- ② 한모씨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답하였고 원고 회사의 감사인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 ③ 원고 회사의 2012년 10월 23일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을 법무사에게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 위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주주간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한모씨에게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도 한모씨로부터 2014년도에 10만주, 2015년도에 10만주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한모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원고의 수익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자산으로 그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한모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그 매매대금만 지급하게 되는 점,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15541, 2010.10.28. 판결 참조).

- ①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인인 한모씨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 ② 원고는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4년도에 10만주, 2015년도에 10만주를 한모 씨로부터 다시 취득하였고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인 한모씨의 자녀들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 자기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되면서 배당금도 증가하게 되는 점,
-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153억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71억원인 점,
- ④ 한모씨는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가능재산은 감소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이 그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2 세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자기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의 과세문제

주주가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진다.

구분	매매목적	소각목적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가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 - 증권거래세 과세 - 저가·고가 양도시 추가적 과세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 - 증권거래세 비과세(서일-177, 2005.2.3.) - 저가·고가 감자시 증여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법인발행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과세문제 없음

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의제배당 중에서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밖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주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2)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개인주주의 소득세 과세 문제

1) 자기주식의 거래로 얻은 개인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인 경우에도 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10%, 20%, 30%)이 적용되나,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예를 들어, 수억원 이상)에는 양도소득이 종합소득보다 조세부담이 적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에 따라 주주의 조세부담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2) 매매거래와 소각거래의 판단기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다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 92누3786, 1992.11.24.).

▶2.3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의 경우의 개인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과세

개인이 자기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주주와 장외거래는 예외로 한다.

1)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구 분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2017.1.1.부터 2018.3.31.까지 양도분		2018.4.1.부터 2020.3.31.까지 양도분		2020.4.1.이후 양도분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상장 주식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원 이상	1% 이상	15억원 이상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원 이상	2% 이상	15억원 이상	2% 이상	
	코넥스시장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 시가총액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위 ①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규정(소령 165 ④)에 의한 평가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이 대주주 판정 지분율 미만이었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판정 지분율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

2) 시간외 매매 방식에 의한 거래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인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증권시장 내에서의 거래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6., 서면2팀-509, 2007.3.26.)

(2)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14 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일몰기한 2017.12.31.까지)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일몰기한 2017.12.31.)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일몰기한 2017.12.31.)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일몰기한 2017.12.31.)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7.1.1.이후 창업기획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함)

⑥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2.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몰기한은 2017.12.31.)

⑦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FreeBoard에서 거래되는 경우)*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05.7.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일몰기한 2017.12.31.).

이 경우 대주주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 프리보드(FreeBoard)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시장을 말한다.

[3]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산출된다.

$$\begin{aligned}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자본적 지출} + \text{양도비용}) &= \text{양도차익} \\ \text{양도차익}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 \text{양도소득 과세표준} \\ \text{양도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양도소득 산출세액} \end{aligned}$$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소기업주식 10%(대주주는 20%),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대주주 3)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그 밖의 주식은 20%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다른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 ~ 40%)을 적용한다.

구분	구분	양도소득세율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기본세율 (6% ~ 40%)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 20%)
	비중소기업 주식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30% 그 밖의 경우 20%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령 167의8).

3)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 25억(2018.4.1.부터 2020.3.31.까지 15억원, 2020.4.1.부터 10억원).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나) 지분율 : 4%

[4]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세무상 문제

1) 저가로 양도한 개인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재계산한다(소법 101 ①, 소령 167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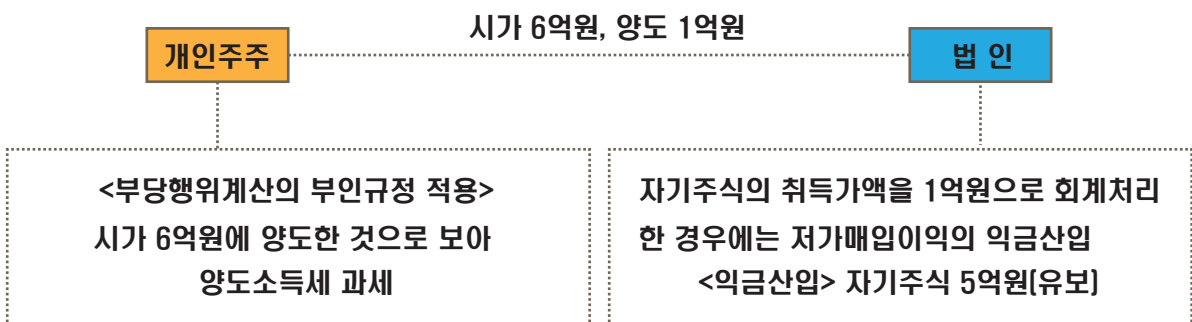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167 ⑥).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매입이익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 경우의 특수관계인과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저가양도 사례



[5]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경우

1) 고가로 매입한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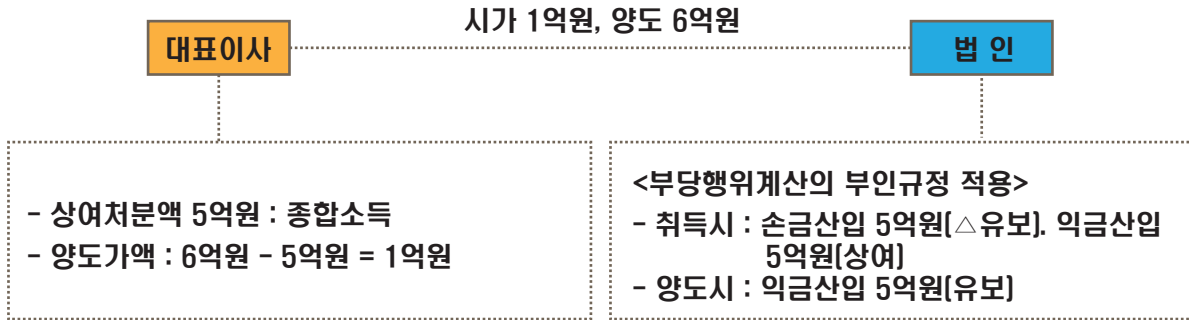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액을 부인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이 실제취득가격을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매입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주주임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고가로 양도한 개인

자기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시가초과 양도가액이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에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고가양도 사례



▶2.4 소각목적인 경우

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에게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아니다.

감자대가가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인 경우에도 감자한 법인에게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이익이 부여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개인주주의 의제배당

개인주주에게는 자본감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대가에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규정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14%를 부담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감자시 의제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자시 증여세 과세

1) 과세요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상증세법 39의2 ①).

증여세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다.

- ① 불균등감자일 것. 감자시 증여세는 불균등감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지분율에 따라 균등감자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②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일 것. 특수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 ③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것. 현저한 이익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분	현저한 이익
일반적인 경우	다음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율기준 : $\frac{\text{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text{1주당 감자대가}}{\text{감자 전 1주당 평가액}} \geq 30\%$ (나) 이익기준 : 이익 \geq 3억원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율기준 : $\frac{\text{1주당 감자대가} - \text{감자전 1주당 평가액}}{\text{1주당 감자대가}} \geq 30\%$ (나) 이익기준 : 이익 \geq 3억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각각 산정한다(재산세과-245, 2012.7.2.).

감자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분	1주당 평가액	비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배제
비상장주식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 증여재산가액

① 일반적인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감자 전 1주당평가액} - \text{1주당감자대가}) \times \text{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times \text{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②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1주당감자대가} - \text{감자 한 주식 1주당 평가액}) \times \text{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주주가 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 이하의 대가를 지급하면 감자대가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주가 평가액보다 대가를 더 받은 경우로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이 규정을 신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규정의 문제점 |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상위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감자한 주주가 받은 이익을 과세하는 계산식을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 ② 주주가 보유주식의 일부가 감자된 경우 감자된 주식은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받았으므로 이익을 보나, 동시에 감자 후 남은 주식은 가치가 감소하여 손실을 본다. 주주가 얻은 이익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액이 되어야 하나, 위 산식은 손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자기증여의 문제가 있다.

3) 증여시기

감자로 인한 증여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불균등감자 일반적 사례

비상장법인인 (주)한국은 주주 을과 정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2,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다.

구분	감자 전 주식 수	감자 주식 수	감자 후 주식 수
개인 甲	500	-	500
개인 乙	300	150	150
개인 丙	100	-	100
개인 丁	100	50	50
계	1,000	200	800

갑과 을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해답

- 자본거래 유형 판단 : 불균등감자
- 요건 검토 : 갑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 : 갑과 을은 특수관계이며, 갑은 대주주에 해당함
 - 현저한 차이 여부 : 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 $(12,000 - 6,000) / 12,000 = 50\% \geq 30\%$
- 갑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감자 전 1주당평가액 - 1주당감자대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12,000 - 6,000) \times 150 \text{주} \times (500 \text{주} / 800 \text{주})$
 = 562,500

평가액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사례

비상장법인인 (주)한국은 주주 을과 정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4,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고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구분	감자 전 주식 수	감자 주식 수	감자 후 주식 수
개인 甲	500	-	500
개인 乙	300	300	-
개인 丙	100	-	100
개인 丁	100	-	100
계	1,000	300	700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해답

- 자본거래 유형 판단 : 불균등감자(액면가액 이하이고 시가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 요건 검토 : 이익을 얻은 乙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 :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며, 乙은 대주주에 해당함
 - 현저한 차이 여부 : 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 $(6,000 - 4,000 / 6,000) = 33\% \geq 30\%$
- 乙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1주당감자대가 - 감자 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 $(6,000 - 4,000) \times 300 \text{주}$
 = 600,000

4)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

-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면4팀-3631, 2006.11.2.).
-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면4팀-211, 2005.2.1.).
-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서면4팀-2776, 2007.9.21.).